



2 총회은급재단 보고

제102회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이 사 장 전계현

상임이사 최우식

1. 조 직

- 이 사 장 : 전계현
- 상임이사 : 최우식
- 이 사 : 정진모 유장춘 이남국 김신점 옥수복 문상무 서홍종 장활욱 하재삼 김성태
- 감 사 : 이종주 이민호

2. 회 의

1) 이사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9. 29(금) 11:00

☞ 장 소 : 노은행복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신입이사장 전계현이 취임 승낙 인사를 하니 참석자 전원이 정관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항에 의거 이사장 됨을 결의하다.
- ② 신입상임이사 최우식이 취임 승낙 인사를 하니 참석자 전원이 정관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2항에 의거 상임이사 됨을 결의하다.
- ③ 2017년 9월 8일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 김성태에 대해서는 사임서 철회요청에 따라 사임서를 반려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정진모의 재청 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④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 강진상은 2017년 9월 15일로 사임됨을 확인하다.
- ⑤ 법인 정기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사 김만영이 보고 하니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2017년 9월 14일 제101회기 제11차 이사회(속회)시 구두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다]
- ⑥ 2017년 9월 18일 속회된 이사회는 찬성한 이사가 위 결의를 명확하기 위하여 의사록에 기명 날인(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29일 현재까지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과 2017년 9월 15일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가 중요한 결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되어 논의된바 추후 이사회에서 재론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정진모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⑦ 최춘경씨가 보낸 내용증명을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고 금일 결의사항을 근거로 법적자문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⑧ 사임한 이사 강진상과 금일 사임서를 제출한 감사 김만영에 대한 보선은 총회임원회에 추천을 받기로 이사 옥수복의 동의와 이사 정진모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7. 10. 24(화)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이사 김성태가 2017년 9월 8일 사임서[붙임1]을 제출하고 2017년 9월 25일 사임서 철회 요청한 것에 대하여 제102회기 제1차 이사회(2017.09.29.)시 사임서를 반려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나 법률상(도달주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2017년 9월 8일자로 사임 처리하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이사 김성태는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철회를 요청한 사항이 있는바 이사 보선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재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재적이사 11명중 10명 참석]
- ② 개인적으로 허락 없이 녹음 및 녹화는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개인적으로 녹음과 녹화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하기로 이사 육수복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2482 손해배상(기)(원고:은급재단/피고:임해순) 소송에 대하여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 받다.
- ④ 제101회기 결산 및 제102회기 예산(안)을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육수복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⑤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 관련 건을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법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최춘경씨가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보고 받고 최춘경의 내용증명(2017.10.17.) 답변서는 법적 자문을 받아 발송하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김신점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⑥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과 관련하여 제101회기 제11차 이사회(2017.09.18.)는 절차와 내용의 증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후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을 받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김신점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⑦ 이사 자격 등 정관 수정에 대하여 이사 이남국, 이사 육수복, 이사 김신점에게 맡겨 정관 개정(안)을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8. 1. 17(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2482 손해배상(기)(원고:은급재단/피고:임해순) 소송에 대하여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② 연금I 2018년도 표준급여표에 대하여 2017년 연금납입금 대비 연금규정을 근거로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하였음을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받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김신점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③ 제102회 총회 결의사항 건은 결의사항 중 8번은 제외하고 받기로 하고 8번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에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김신점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5524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원고:최춘경, 김장수/피고:은급재단)에 대하여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법인측 소송대리인으로 로고스 류두현 변호사, 이무섭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인하기로 하고 선임비용은 상임이사 최우식에게 위임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또한 소송 준비서면에 대해서 임원에게 이메일로 공유하기로 하고 제공 받은 자료에 대해 외부유출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유출할 경우 정관 제7조(임원의 해임)에 근거로 해임키로 이사 문상무의 동의와 이사 김신점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⑤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재결의 필요여부를 법적자문 받기로 이사 문상무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⑥ 본 법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김신점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⑦ 정관 개정 관련 소위원회 보고(제102회기 제1차 ~ 제102회기 제3차)를 이사 김신점으로부터 보고 받고 소위원회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재론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⑧ 이사 선임 건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총회 임원회의 이사 추천을 근거로 사임한 임원에 대해 이사 강진상 代 장창수(동대구노회, 대명교회)를 이사 김성태는 재선임, 감사 김만영 代 이민호(경북노회, 왜관교회)를 선임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동한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또한 정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김동한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에 임원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8. 2. 27(화) 19:00

☞ 장 소 : 대전(계룡스파텔 세미나실)

☞ 결의사항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2482 손해배상(기)(원고:은급재단/피고:임해순)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임해순 장로가 제출한 탄원서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법인측 입장을 표명한 탄원서[붙임2]를 제출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영진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② 정관 개정 관련 소위원회 서기 김신점으로부터 정관 개정(안)을 축조심의 후 [별지]와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총회산하기관 정관개정연구위원회로부터 수정 요구 시 현 소위원회가 답변하기로 이사 김성태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③ 제102회기 제3차 이사회(2018.01.17.)시 이사로 선임된 장창수 목사가 선임을 고사하는바 총회 임원회에 재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④ 벽제중앙추모공원 관련 토론[21:20 ~ 22:30]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다.

22시 40분, 정회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문상무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기도문 후 2018년 2월 28일 속회 전까지 정회하다.

- 속 회 -

2018년 2월 28일(수요일) 8시 30분, 대전(계룡스파텔 세미나룸)에서 이사장 전계현의 사회자로 찬송가 23장 제창 후 하박국 3장 16~18절을 봉독하고 이사 유장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친다.

☞ 결의사항

① 벽제중앙추모공원 관련 토론회[08:40 ~ 09:30]

가. 이사장 전계현으로부터 정회 전까지 벽제중앙추모공원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을 청취 후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다.

나. 벽제중앙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최춘경과 종전 계약 해지된 충성교회와 함께 모임을 갖기로 하고 법적 문제까지도 논의하기 위하여 각 측에서 선임한 법률대리인도 참석을 요청하기로 하다.

이 모임에 대한 일정조율을 상임이사에게 맡기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김성태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8. 3. 23(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 관련하여 최춘경을 상대로 반소(청산절차 소송)에 대하여 법적자문을 받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김문갑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8. 7. 3(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 내용 중 최춘경을 상대로 반소에 대해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법무법인 지평의 법적 자문 결과 반소는 불가함을 보고 받다. 단, 미 정산 된 7억에 대한 소송은 별도의 소송으로 가능함을 보고 받다.

② 법인 현황을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다.

③ 법인 중간 감사보고서를 감사 이종주로부터 보고 받고 지적사항은 추후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정진모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5524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원고:최춘경, 김장수/피고:은금재단)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정진모의 동의와 이사 김성태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2482 손해배상(기)(원고:은금재단/피고:임해순) 소송판결문 및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2심과 동일한 조건(수임료 등)으로 현재 소송대리인 로고스(류두현, 이무섭 변호사)를 재선임하여 대응하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정진모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⑥ 이사 선임 건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총회 임원회의 이사 추천을 근거로 사임한 임원에 대해 이사 김동한 代 서홍종(서서울노회, 성은교회)을 이사 강진상 代 장활욱(남울산노회, 동평교회)을 선임하기로 하다.
정년으로 사임한 이사 김문갑과 이사 김영진에 대해 총회임원회에 임원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사 김성태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⑦ 총회 재정부에서 이첩된 연금가입자회 재정청구에 대해서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총회 재정부로 회부하기로 이사 정진모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⑧ 차기 이사회는 2018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18. 7. 18(수)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이사 유장춘이 참석과 관련하여 결석계·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다.
- ② 이사 유장춘이 제출한 결석계·의견서 내용을 이사장이 낭독하다.
제102회기 제6차 이사회(2018.07.03.)시 법인 이사로 재임 중인 유장춘 목사가 최춘경과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설명을 이사장으로서 한 것으로 입장을 표명하다.
이사 유장춘은 이사회 결의 없이 충성교회측에 납골당 금융거래를 요청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피소되고 그 결과 현재 법원에 상고중이기에 정관 제7조(임원의 해임), 제2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을 근거로 법적자문을 받기로 이사 서홍종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결의하다. (찬성 7명 / 아니요 1명 - 이남국)
- ③ 법인 중간 감사보고서를 감사 이종주로부터 지적사항 및 향후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후 재론하기로 하다.
- ④ 차기 이사회는 2018년 8월 22일 14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이사 김성태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8) 제8차 회의

☞ 일 시 : 2018. 8. 22(수) 14: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5524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원고:최춘경, 김장수/피고:은급재단)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벽제중앙추모공원에 대하여 1심 선고 후 재론하기로 이사 서홍종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② 임원 선임 건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총회 임원회의 이사 추천을 근거로 사임한 임원에 대해 이사 김문갑 代 하재삼 목사(김제노회, 영광교회)를 선임하기로 이사 김성태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③ 제103회 총회 청원서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재정청원만 하기로 이사 김성태의 동의와 이사 김신점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④ 총회 재정부에서 재 이첩된 연금가입자회 재정청구와 연금가입자회가 요청한 총회보고서 삽입 건에 대해서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2회 이첩된 재정청구와 총회보고서 삽

입 건을 총회임원회에 이첩하기로 이사 서흥종의 동의와 이사 장활욱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2) 정관 변경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11. 21(화) 12: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조직은 위원장 이남국, 서기 김신점, 위원 육수복로 선임하기로 결의하다.
- ② 정관 개정을 위하여 타교단(통합측) 및 각 위원의 수정(안)을 축조심의 하다. 전체 수정된 정관 개정(안)을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재 논의하기로 결의하다.
- ③ 차기 소위원회를 2017년 11월 29일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7. 11. 29(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정관 개정(안)을 축조심의하다.
- ② 수정된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8. 1. 17(수)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정관 개정(안)의 내용 중 제6조(임원의 선임) ④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원의 임기는 보장하기로 결의하다.



[별 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은급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이하“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서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 적)

법인은 예수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2. 정년, 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
3. 소천 한 교직자의 유족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4. 은퇴교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사업
5. 사회복지를 위한 장례문화, 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임대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등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총회장 당연직)
2. 상임이사 1인(총회 총무 당연직)
3. 이 사 13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소속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총회 규칙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은 연금과 기금을 납입한 목사와 기금 가입 및 담임목사가 연금에 가입한 교회의 시무장 로로 한다.
- ⑤ 위 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이사회 개최 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총회장이 이 사장에 총무가 상임이사에 취임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이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하는 행위
5. 재단에 손실금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6. 심의하지 않는 업무를 공개하는 행위
7.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자격상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즉시 임원의 자격이 상실 된다.

1. 사임서를 본회나 사무국에 제출하는 행위
2. 제6조(임원의 선임) ④항 연금, 기금을 해지 하는 행위

제9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 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③ 정관 제7조(임원의 해임), 제8조(임원의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재 선임될 수 없다.

제10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년
 2. 이 사 3년
 3. 감 사 2년
- ② 임원의 임기 중 교회 시무 은퇴 시 임기도 종료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과 동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진술을 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 되고 출석이사 중에서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되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여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2조 제3항의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회의록)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 1. 일시
- 2. 장소
- 3. 참석 이사 및 감사의 명단
- 4. 의결사항
- 5.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기재한다.
단, 반대하는 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다.

제1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연금/기금 자원 건전성 유지 의무)

- ①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연금/기금의 재원을 건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연금/기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36조(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에 관한 규정에 반영한다.

제4장 재 정

제24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본 교단 산하 전국 교회와 교직자들이 납부한 은금기금과 기여금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과 부동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정관변경)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수입금 및 운영경비)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27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결산 및 예산편성)

법인의 결산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결산잔액)

매 연도의 결산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상환, 기금적립, 기타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0조(유동자산의 관리)

유동자산 운용 시 발생하는 수입과 총회소속 교회나 교직자가 납부하는 기금, 연금 등 동산은 사무국에서 상임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관리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 무 부 서

제32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 보고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규정 및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33조(법인 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회산하의 기관이나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추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 1. 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 2. 연금 I 규정 및 시행세칙
- 3. 연금 II 규정 및 시행세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 등기에 관련된 사항은 법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1. 6. 27 제정
 2003. 2. 3 개정
 2004. 7. 9 개정
 2007. 6. 21 개정
 2013. 10. 4 개정
 2018. 5. 16 개정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태득	370320-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260-2
신현진	42021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16-12
송정현	470818-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0-17
김장수	480720-1××××××	대구광역시 수성구매호동 1337-11(3층)
이양호	300115-1××××××	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21
홍덕선	46020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26-18
라도재	430315-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58 청계벽산아파트 107-1505
권정식	430721-1××××××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542-1 남영네오하이츠 101-1305
최양섭	430811-1××××××	경남 통영시 도천동 95-2
이영희	360130-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78
박원규	340617-1××××××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건영아파트 101-402
한희수	4310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미원2차아파트 501
이봉재	330129-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58-4
하귀호	490410-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1-3 신동아아파트 38-401
류재양	361210-1××××××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388



별지 1.

기 본 재 산 목 록

1. 부동산 : 없음
2. 동 산

구 분	내 역	금 액
정기예금	외환은행	2,645,000,000원
	한미은행	685,900,000원
계		3,330,900,000원

3. 사업보고

1) 결산 보고

(1) 대차대조표

전기 : 2016년 9월 1일 ~ 2017년 8월 31일

당기 : 2017년 9월 1일 ~ 2018년 7월 31일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I. 유동자산		2,059,086,902		2,002,785,057
(1) 당좌자산		2,059,086,902		2,002,785,057
현금및현금등가물		103,350		3,475,420
보통예금		305,718,288		284,408,133
선급법인세				93,564,740
선급법인세		114,428,500		
가지급금		1,638,836,764		1,621,336,764
II. 고정자산		36,081,020,029		34,143,677,575
(1) 투자자산		34,972,961,721		33,037,288,827
매도가능증권				1,300,000,000
개인회원보조금		651,490,000		592,370,000
장기금융상품		26,326,647,213		23,360,094,319
장기대여금		4,115,004,110		4,115,004,110
종합예금		450,000,000		240,000,000
단기대여금		3,429,820,398		3,429,820,398
(2) 유형자산		1,108,058,308		1,106,388,748
토지		472,850,100		472,850,100
건물		632,343,750		632,343,750
비품	30,162,290		28,492,730	
비품감가상각누계액	27,297,832	2,864,458	27,297,832	1,194,898
(3) 무형자산				
자산총계		38,140,106,931		36,146,462,632
I. 유동부채		318,715,740		318,095,990
예수금		1,065,427		445,677
가수금		317,650,313		317,650,313
II. 고정부채		31,831,157,670		30,743,753,965
퇴직급여충당금		73,179,442		73,179,442
기금책임준비금		8,701,550,837		8,571,808,587
연금책임준비금		23,056,427,391		22,098,765,936
부채총계		32,149,873,410		31,061,849,955
I. 책임준비금				
II. 이익잉여금		5,990,233,521		5,084,612,677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1)지급준비금		
(2)처분전이익잉여금	5,990,233,521	5,084,612,67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084,612,677	4,863,996,12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당기순이익	905,620,844	220,616,555
(3)차기이월잉여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자본총계	5,990,233,521	220,616,555
부채+자본총계	38,140,106,931	36,146,462,632

(2) 손익계산서

전기 : 2016년 9월 1일 ~ 2017년 8월 31일

당기 : 2017년 9월 1일 ~ 2018년 7월 31일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I. 사업수익	5,508,336,507	5,362,551,390
(1)납입금수익	3,034,492,294	3,399,038,265
기금납입금수입	291,071,250	351,611,478
연금납입금수입	2,743,421,044	3,047,426,787
(2)투자수익	887,747,929	768,949,920
이자수입	743,100,893	632,451,235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44,647,036	136,498,685
(3)기타수익	1,586,096,284	1,194,563,205
감사현금	31,488,294	38,598,673
기금책임준비금환입액	161,329,000	47,582,080
연금책임준비금환입액	1,393,278,990	1,108,382,452
II. 사업비	4,612,299,781	5,107,966,101
(1)기금급여	173,770,000	184,490,000
은퇴기금급여	169,695,000	173,090,000
은퇴일시금기금급여	3,800,000	11,100,000
은퇴유족기금급여	275,000	300,000
(2)연금급여	1,258,429,601	1,245,974,564
은퇴연금	834,275,000	731,846,000
은퇴일시금	111,723,000	298,751,000
장해연금	17,302,000	21,336,000
유족연금	15,608,000	12,046,000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사망일시금	132,186,000		24,606,000	
장례비	11,127,000		1,985,000	
특례연금	119,487,500		134,370,000	
납입금반환이자	16,721,101		21,034,564	
(3)전입액	3,034,492,294		3,399,038,265	
기금책임준비금전입액	291,071,250		351,611,478	
연금책임준비금전입액	2,743,421,044		3,047,426,787	
(4)사업비용	21,383,000		137,085,000	
S/W개발비			88,000,000	
S/W유지관리비	11,790,000		12,980,000	
홍보비	1,593,000		1,105,000	
법무비	8,000,000		35,000,000	
(5)관리운영비	124,224,886		141,378,272	
기본급	39,825,000		42,340,000	
상여금	14,430,000		14,050,000	
제수당	2,189,900		2,273,410	
복리후생비	26,350,900		30,623,340	
교육비(직원훈련비)	1,693,000		1,660,000	
여비교통비	2,559,200		4,483,800	
도서인쇄비	2,895,802		1,528,129	
세금과공과	50,000		112,500	
소모품비	1,161,650		1,937,240	
통신비	2,556,280		2,671,040	
우편료	3,699,733		5,040,229	
경조비	200,000		460,000	
접대비	2,668,431		2,609,900	
지급수수료	8,784,110		12,828,230	
부담금(연합기관)			1,080,000	
잡비	743,450		1,298,800	
회의비	14,417,430		15,020,500	
감가상각비			1,361,154	
(6)투자손실				
Ⅲ. 사업이익		896,036,726		254,585,289
Ⅳ. 사업외수익		51,843,753		26,580,787
이사부담금	3,000,000		1,000,000	
잡수익	48,843,753		25,580,787	
Ⅴ. 사업외비용		42,259,635		60,549,521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잡손실	22,500		9,150,794	
선취이자상각	42,237,135		51,398,727	
Ⅵ. 경상이익		905,620,844		220,616,555
Ⅶ.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05,620,844		220,616,555
Ⅷ. 법인세등				
Ⅸ. 당기순이익		905,620,844		220,616,555

2) 기금 현황

- (1) 기금 가입 현황 : 4,533교회
- (2) 대상자 현황

기준일 : 2018년 8월 20일

	대상자수	금 액	비 고
은퇴기금급여	180명	16,085,000원 / 月	
유족기금급여	2명	25,000원 / 月	
합 계	182명	16,110,000원 / 月	

3) 연금 현황

- (1) 연금 가입 현황 : 1,165명
- (2) 대상자 현황

기준일 : 2018년 8월 20일

	대상자수	금 액	비 고
은퇴연금급여	169명	84,860,000원 / 月	
특례연금급여	39명	10,610,500원 / 月	
유족연금급여	8명	1,744,000원 / 月	
장애연금급여	3명	1,272,000원 / 月	
합 계	219명	98,486,500원 / 月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재정부장
제목 : 재정청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총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에서 기금 외 일반관리비(사무비, 인건비 등)로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금액 : 사역원정(400,000,000원)
 2. 청원내역 : 일반관리비
- ※ 재단직원의 인건비(각 수당포함)를 총회 지원금 예산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절약 가능함

2018년 9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이사장